

제1장 총칙

1.1. 통칙

1.1.1. 목적

본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우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로스쿨 학생의 법률이론·변론실무 및 법적 논증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대법원 주최 변론 경연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

1.1.2. 대회 명칭

본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명칭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로 한다.

1.1.3. 대회의 주최·주관

- 1)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며 대회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2) 대회장은 대회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집행위원회는 대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주무위원 1인 포함) 및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 4)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1.1.4. 대회의 구성

대회는 서면심사, 본선 및 결선으로 구성된다.

1.1.5. 대회 개최 횟수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1.1.6. 대회 규정의 적용 및 해석

- 1) 대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거나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라 대회장이 결정한다.
- 2) 대회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대회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2. 경연

1.2.1. 경연 분야

경연은 민사, 형사 등 재판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2.2. 경연 방식

경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1. 예선: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본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

2. 본선

1)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하고,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각 서면(검찰 측의 의견서,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을 모두 제출한다.

2) 집행위원회는 대진표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를 부여하고(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그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

3) 경연 팀은 부여된 지위에 따라 화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4) 경연 팀은 제출된 서면과 화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본선 변론을 실시하고,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결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

3. 결선

1) 결선문제는 본선문제와 동일하다. 다만 결선 경연 전(1시간 이내)에 본선에 출제된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하는 등 심화된 내용을 부가할 수 있다.

2) 경연 팀은 변론 준비를 거친 후(1시간 이내) 화상자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토론 형식으로 구두변론을 실시하며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한다.

1.2.3. 경연 문제

1) 문제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논증 능력 함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출제 하되, 재판기록의 형태를 띠는 '기록형' 또는 사건 개요 설명의 형태를 띠는 '사례형'으로 제시된다.

- 2) 문제는 예선에서 민사·형사 각 1문제, 본선 및 결선에서 민사·형사 각 1문제를 출제하되, 결선에서는 본선에 출제된 민사·형사 각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
- 3) 문제는 예선 및 본선의 경우 경연 팀 양측에 동일하게 제시된다.

1.3. 참가자

1.3.1. 참가자격 및 팀(team)의 구성

- 1) 대회에는 동일한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횟수는 제한이 없다.
- 2) 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 3) 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발견되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

1.3.2. 참가자의 공정성

1.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연에서 요구되는 법적·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연구하고, 변론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학 로스쿨의 교수 등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 자료조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 2) 서면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 3) 구술변론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2.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경연 심사를 위한 재판부에 재학 로스쿨, 인적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경연에 참가하여야 한다.

1.4. 재판부

1.4.1. 재판부의 구성

1) 재판부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한다.

2) 심사관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4.2. 재판부의 독립성

재판부는 본 대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평가한다.

1.4.3. 재판부의 공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경연의 참가자와 사이에 배우자·친족의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법관은 심사관이 될 수 없다.